국제협력사업자문위원회운영지침

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

전부개정 2020. 3. 20. 지침 제300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제협력사업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국제협력사업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한다.

1. 국제협력사업 확대 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
2. 국제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, 계약 및 이행, 추진실적 점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
3. 국제협력사업 수행 중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내부위원 및 6명 이하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국제협력사업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내부위원은「직제규정」에 따라 기관운영 기본계획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1명과 1급 또는 1급 상당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 2명으로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소관부처에서 보건의료 해외진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공무원 1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하로 한다.

1. 보건・의료 분야 종사자로서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

동종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

2. 외교·통상·국제법 등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그 밖에 원장이 제1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학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③ 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「정관」 제13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

2. 본인이 위원직 즉시사임 의사를 통보하였을 때

3.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위원장은 개의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외부전문가, 관계인 등을 초빙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으며, 그 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제7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밀의 유지) 위원 등 회의에 참석한 자는 회의 중에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

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수당 등 지급) 위원회의 위원 및 수시자문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, 관계인 등에게는 「예산집행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정부기관 소속 위원이 본인의 소관 업무(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를 포함한다)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보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국제협력사업 자문위원회 서면 자문 제시의견서

안건명 :

위 안건을 「국제협력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6조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위 원 장 (인)

위원명	의견 내용

년 월 일

자문위원 소속 성명 (인)